

202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1. 독립영화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증진에 기여
2. 한국 독립영화의 유통 활로 확보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 및 저예산영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1. 지원 규모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용관 지정승인을 받은 영화관 운영자 ※ 신청일 현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상영관
지원규모	지원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0개 내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영화관 85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전용관 운영지원」과 「시설개선」으로 구분하여 지원금 결정 지원 결정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름 지원 전용관 수 및 지원 결정액에 따라 부문 간 지원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용관 중 「시설개선」에 지원 신청한 전용관을 별도로 심사하여 시설개선 지원액 결정
지원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5백만원

2. 보조금 사용 용도

구분		내용								
보조금 사용 용도	전용관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프로그래밍, 상영관 시설개선, 부금액, 영사/매표장비 대여료 및 유지비, 상영관 임대료, 운영인력(프로그래머, 영사기사, 매표) 인건비 등 독립영화전용관 활성화 및 관객확대의 용도로 집행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대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홍보/프로그래밍</td> <td>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홍보, 기획전, 이벤트 등 활성화 프로그램(홍보/프로그래머 인건비 포함)</td> </tr> <tr> <td>인건비</td> <td>영사기사 1인, 프로그래머(홍보) 1인, 매표 담당자 1인</td> </tr> <tr> <td>상영관 개선</td> <td>극장의 상영환경개선(매표/영사/음향) 등 사업장에 필요한 개선</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검증 수수료는 집행 가능하며 그 외 시설관리/운영비, 극장 비품 구입비, 식/음료비 등은 집행 불가 ■ 세부 보조금 사용 용도는 '전용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 가이드' 참조 	대분류	소분류	홍보/프로그래밍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홍보, 기획전, 이벤트 등 활성화 프로그램(홍보/프로그래머 인건비 포함)	인건비	영사기사 1인, 프로그래머(홍보) 1인, 매표 담당자 1인	상영관 개선	극장의 상영환경개선(매표/영사/음향) 등 사업장에 필요한 개선
	대분류	소분류								
홍보/프로그래밍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홍보, 기획전, 이벤트 등 활성화 프로그램(홍보/프로그래머 인건비 포함)									
인건비	영사기사 1인, 프로그래머(홍보) 1인, 매표 담당자 1인									
상영관 개선	극장의 상영환경개선(매표/영사/음향) 등 사업장에 필요한 개선									
시설개선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분류</th> <th>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상영관 시설개선</td> <td>극장환경개선, 상영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경상비로 사용불가)</td> </tr> <tr> <td>세부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환경개선: 영사/음향시설, 냉/난방, 환기, 소음방지 시설, 유해물질 제거시설 등 ■ 극장환경개선: 조명·바닥 공사, 좌석 등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지원」 선정 상영관에 한하여 시설개선비로 지원 결정된 보조금의 금액만 사용 가능 ※ 지원불가사항: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등 기계 등 처분 가능한 자산취득 항목 ■ 세부 보조금 사용 용도는 '전용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 가이드' 참조 	대분류	소분류	상영관 시설개선	극장환경개선, 상영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경상비로 사용불가)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환경개선: 영사/음향시설, 냉/난방, 환기, 소음방지 시설, 유해물질 제거시설 등 ■ 극장환경개선: 조명·바닥 공사, 좌석 등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대분류	소분류									
상영관 시설개선	극장환경개선, 상영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경상비로 사용불가)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환경개선: 영사/음향시설, 냉/난방, 환기, 소음방지 시설, 유해물질 제거시설 등 ■ 극장환경개선: 조명·바닥 공사, 좌석 등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3. 사업 수행 요건

구분		내용
필수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별 최대 2개 상영관까지 공모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 상영관까지 지원 가능 ■ 지원관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총보조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의무 ■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의무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과 회계검증을 진행해야함) ■ 동 사업은 연 1회 공모함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 단체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사업자 및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물 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 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영관일 경우 신청불가하나, 지자체(자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상영관일 경우 지원 가능 ■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법인 포함)는 신청 불가.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제재조치 대상 행위 발생당시 그 법인의 대표였던 자 그리고 대표였던 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도 신청 불가 ■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포함)가 위원회에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단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그 채무를 변제한 신청자는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9에 의거, 동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상영관 및 대표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경우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상영관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상영관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상영관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상영관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부를 회수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 상영실적을 누락 혹은 편집하여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함.
- 동일상영관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및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중복 접수 시 양쪽 사업 모두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함.
-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상영관은 지원일로부터 3년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접수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전용관에서 지정하는 전용관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 의무상영비를 준수

- 약정기간 내 위원회가 독립영화로 인정한 작품을 연간 실제 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여야 함

사업수행
조건

[예시]	독립영화 의무 상영일수
연간 상영일수가 365일인 경우	219일 이상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기타영화로 간주함.

주1) 독립영화/예술영화의 교차상영은 독립영화 상영일수 1/N로 간주함.

주2) 독립영화/비독립영화(예술영화 제외)의 교차 상영은 비독립영화 상영일수로 간주함.

- 보조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지원 상영관 상영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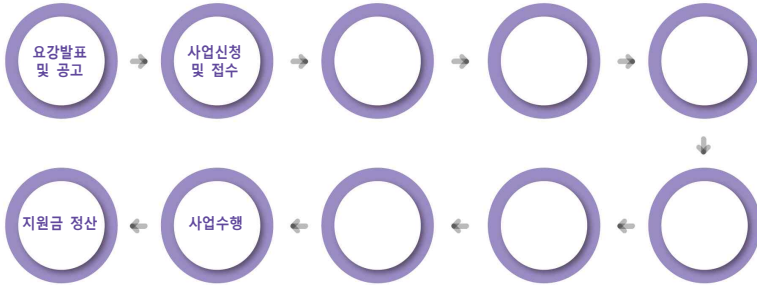
4.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접수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2. 12(수) ~ 2. 26(수) 16:00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FC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각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사에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신청사명.zip)로 e나라도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 시설개선 부문 지원 상영관은 별도 1개의 압축파일 추가 제출(파일명: 신청사명_시설개선.z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압축파일 용량: 50MB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출 서류	1.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신청서 (PDF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상영관 운영실적 ■ 2025년도 상영관 사업계획서 ■ 2025년도 상영관 예산계획서
	2. 상영관 설비 사양 (PDF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에 지원받았던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 영화관에 한해 제출 ■ 상영관 외관 및 주변 환경 사진(또는 참고자료) ■ 상영관 도면 ■ 영사 및 음향시설 세부사양
	3. 신청자 현황 (PDF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1부 ■ 영화상영관등록증 1부 ■ 영화상영업신고증 1부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4.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PDF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 부문 지원 영화관에 한해 제출 ■ 2025년도 상영관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2025년도 상영관 시설개선 예산계획서 ■ 상영관 외관 및 주변 환경 사진(또는 참고자료) ■ 상영관 도면 ■ 영사 및 음향시설 세부사양 ■ 상영관 시설 개선 실적(최근 3개년) 및 향후 개선 계획



1. 지원절차 흐름도



2. 선정절차

(1) 심사위원회 구성

- ▣ 각 분야(연출/제작/배급·마케팅/학계·평론/영화제 등) 내·외부전문가 심사위원 후보를 총 인원의 5배수 이상 무작위로 추천 후, 소관 부서에서 선순위 후보 순으로 섭외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2)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상영관을 평가하여 대상 지원 대상 후보상영관을 선정함
- 선정된 상영관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3) 선정기준

전용관 운영 지원	전용관 운영 지원(기존 지원 극장)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 (총점 100점)</th> <th>세부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수행능력 (4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td> </tr> <tr> <td>사업계획 (5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td> </tr> <tr> <td>지원 파생 효과 (1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사업계획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지원 파생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사업계획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지원 파생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전용관 운영 지원(신규 지원 극장)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 (총점 100점)</th> <th>세부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수행능력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td> </tr> <tr> <td>사업계획 (5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td> </tr> <tr> <td>지원 파생 효과 (1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td> </tr> <tr> <td>영사음향 시설의 성능 (1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소스 재현의 충실도 상영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영사음향 시설 관리 적절성 </td> </tr> <tr> <td>상영관 환경의 적절성 (1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편의성 및 쾌적도 상영관 규모의 적합성 </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사업계획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지원 파생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영사음향 시설의 성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소스 재현의 충실도 상영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영사음향 시설 관리 적절성 	상영관 환경의 적절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편의성 및 쾌적도 상영관 규모의 적합성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실적(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상영관 홍보 실적(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독립영화 관련 프로그램 계획(기획의 질적 우수성, 적절성 등) 											
사업계획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 홍보 계획(상영관 활성화, 신규관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 구성 인력의 전문성 독립영화 상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 												
지원 파생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상영관의 역할 정도(극장운영의 사회적 가치) 												
영사음향 시설의 성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소스 재현의 충실도 상영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영사음향 시설 관리 적절성 												
상영관 환경의 적절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편의성 및 쾌적도 상영관 규모의 적합성 												
전용관 시설 개선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항목 (총점 100점)</th> <th>세부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수행능력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관 운영지원」 평가점수의 20% </td> </tr> <tr> <td>증장기적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안정성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계획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td> </tr> <tr> <td>상영관 영사설비 및 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이 영사장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업무의 양에 적합한 인력이 고용되었는가? </td> </tr> <tr> <td>시설개선 계획의 적절성과 현실성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하려는 장비와 설비의 규격,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시설개선 계획이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개보수 일정이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td> </tr> <tr> <td>영사설비·시설개선 지원의 효과 (20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의 기술적 수준면에서 개선정도가 큰가? 영화관람 환경의 쾌적도 및 편의성 증대 정도가 큰가? </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관 운영지원」 평가점수의 20% 	증장기적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안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계획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상영관 영사설비 및 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이 영사장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업무의 양에 적합한 인력이 고용되었는가? 	시설개선 계획의 적절성과 현실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하려는 장비와 설비의 규격,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시설개선 계획이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개보수 일정이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영사설비·시설개선 지원의 효과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의 기술적 수준면에서 개선정도가 큰가? 영화관람 환경의 쾌적도 및 편의성 증대 정도가 큰가? 	
심사항목 (총점 100점)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관 운영지원」 평가점수의 20% 												
증장기적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안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관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계획이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상영관 영사설비 및 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이 영사장비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업무의 양에 적합한 인력이 고용되었는가? 												
시설개선 계획의 적절성과 현실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하려는 장비와 설비의 규격, 개보수 완료 후 시설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시설개선 계획이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개보수 일정이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영사설비·시설개선 지원의 효과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영의 기술적 수준면에서 개선정도가 큰가? 영화관람 환경의 쾌적도 및 편의성 증대 정도가 큰가? 												
시설 개선 지원*													
※ 「시설 개선」은 필수 신청이 아니며, 「전용관 운영 지원」 선정 사업자에 한하여 별도 심사 실시 ※ 「시설 개선」 제출 서류 검증을 위하여 상영관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1.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단,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보조금 집행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 본 보조금은 전용관 운영비 관련 용도로만 집행 가능함(세부 용도 '2.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의 2)보조금 사용용도' 참조)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의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3. 통지의무 및 승인

- ☐ 보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의 발생 시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영관명 변경, 주소지 이전, 사업자 변경, 상영관 운영 중단(휴관 포함), 법 미준수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 계획 제출 등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내역 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동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

4. 수행명령

-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 지조사를 할 수 있음

5.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정산범위: 정산범위: 총보조사업비(위원회 보조금+자기부담금)
- ☐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서류 :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상영실적, 집행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 ☐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6. 이월

-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7.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 약정서

상의 의무사항 불이행,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타기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의 재원이 국고, 기금인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음)
- 실적보고서(분기별 상영실적 포함)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각종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각종 성범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 보조사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직장 내 성희롱)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 보조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약정무무를 미이행한 경우 지원 대상 작품과 보조사업자(자연인인 경우)와 보조사업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 보조사업자(법인인 경우)의 제재대상행위 당시 대표자였던 자연인과 그 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에게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재 및 벌칙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9. 정보공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1. 근로환경 개선

☐ 임금체불 방지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 사업에 관여하는 소속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표준보수지침 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 보수지급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 건강권 보장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아동 보호

-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안전권 등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를 하지 않아야 함

2. 성범죄 대응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이수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대표, 프로그래머, 운영인력, 기타 프리랜서 일체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공지)

3. 성평등 정책

☐ 참여자 성비자료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 착수 이전 시점과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점에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별첨양식 활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정보제공 동의

- ☐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보조사업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6. 문의처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영화문화팀

사업명	담당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정하선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